<R&D매니지먼트 동향 브리프: 26-07> 사단법인 한국R&D매니지먼트협회(2026.10.30.)

미국 하원 특별위원회 연구보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: 정부 지원연구에 대한 적대국의 탈취 차단

□ **미국 의회 차원의 연구보안 통제 논리 강화**: 미 하원 대중국 전략특별위원회는 연구보안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학계의 주장을 반박하며,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가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 현대화(민군융합)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의 정당성을 역설함.

□ **핵심 연구 협력 지표로서 '공동저술' 격상**: 논문 공동저술은 단순 명목상 참여가 아닌 데이터 공유, 방법론 논의 및 암묵적 지식 이전을 수반하는 실질적 협력 지표이자 핵심 수사 단서로 간주함.

□ **자율 규제의 한계와 행정 착오 프레임 비판**: 반복적인 해외 자금 및 이해충돌 미신고를 단순한 '서류 누락'이나 '행정 실무 착오'로 주장하는 학계를 비판하며, 이는 연방 연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위반임을 명확히 함.

주요 출처:
https://chinaselectcommittee.house.gov/sites/evo-subsites/selectcommitteeontheccp.house.gov/files/evo-media-document/how-to-stop-chinas-theft-of-taxpayer-funded-research.pdf

1. 추진 배경

○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일부 학계가 '연구보안 강화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한다'는 주장이 전략적 현실을 오판한 것이라고 반박함.

○ 미국은 역동적인 연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대국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둘 수 있으며,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.

- 특히 중국의 민군융합(MCF) 전략 하에서는 민간 연구와 군사 목적의 경계가 모호해지므로, 전통적인 학술 교류의 개방성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.

○ 1985년 제정된 NSDD-189[1]는 현대의 고도화된 국가 주도 기술 탈취, 글로벌 인재 영입 프로그램, 클라우드 기반 협력 등 변화된 지정학적·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므로, 현대적 관점에서 연구보안 조치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임.

1) NSDD-189(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189)은 1985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결정 지침으로,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만 기밀분류(Classification)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.

2. 연구 협력 및 공동저술(Co-authorship)의 실질적 안보 위협

○ 공동저술은 곧 실질적 협력: 공동저술을 협력과 분리하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을 배척하며, 출판물 공동저술은 지식 이전, 민감한 초기 단계 통찰력 공유, 암묵적 전문성이 전수되는 명백한 협력 과정으로 간주해야 함.

○ 수사 및 적발의 핵심 지표 활용: 미 연방 법집행기관은 지난 10년간 공동저술 데이터 및 서지 분석(Bibliometric analysis)을 활용하여 미신고 해외 자금망과 숨겨진 소속 기관을 적발하는 핵심 수사 지표로 삼아 왔음.

○ 기초연구 개방성 주장의 맹점: 기초연구 결과물이 공개 출판된다 하더라도, 논문은 성공한 결과물의 요약본일 뿐임.

- 실험 설계 실패 사례, 매개변수 조정, 문제 해결 접근법 등 출판물에 담기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공동연구를 통해 적대국 방위 산업으로 유출되는 것이 더 치명적인 위협임.

3. 대학의 자율 규제(Self-Policing) 한계와 부당한 행정 부담 프레임 비판

○ 대학 자율 규제의 구조적 실패: 대학은 연방 연구비 수주, 출판물 실적 향상, 글로벌 순위 상승 등을 위해 해외 자금과 국제 파트너십을 유치해야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짐.

- 이로 인해 대학은 연구보안 위험을 축소 해석하거나 적극적인 감시를 기피하려는 제도적 맹점을 지니고 있음.

○ 행정 착오(Clerical Errors) 주장의 위험성: 수년에 걸친 해외 직책 유지,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 참여, 보상 수령 사실 등을 연방 정부에 미신고한 행위는 결코 단순한 서류 실수나 서식 이해 부족이 아님.

- 이는 연방 보조금 규정 위반이자 중대한 이해충돌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핵심 사안임.

○ 행정 부담(Undue Burden) 불평에 대한 반박: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(연방 연구비)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이, 그 자금이 적대국의 전략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임.

4. 의회 차원의 연구보안 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권고사항

○ SIRA 법안(H.R. 8901)[2] 제정 추진: 연방 연구비 수혜자가 미국 정부의 제한 대상 목록(Restricted Entity List)에 등재된 기관 및 해당 기관 소속 개인과 연구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기준 수립을 권고함.

○ 표준화된 연구자 기여도 공개 의무화: 논문, 프리프린트 등 연방 지원 연구 결과물 출판 시, 각 저자의 실질적 역할(개념화, 방법론, 데이터 분석, 자금 지원 등)을 명확히 식별하고 인증하는 표준화된 기여도 공개 제도를 의무화해야 함.

○ 사실 기반의 행정제재(Suspension & Debarment) 확대: 형사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, 신뢰할 수 있는 수사/감사 기록, 미신고 사실, 허위 진술 등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선제적으로 연구비 지원 중단 및 참여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적극 발동해야 함.

5. R&D 매니지먼트 관점의 시사점

○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인프라 기반 국제협력 추진: 해외 기관, 특히 전략 경쟁국 소속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비 수혜 시, 해당 기관이 미국 정부의 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함.

○ 투명한 이해충돌 관리 및 연구자 교육 고도화: 연구자의 해외 직책, 자금 수혜, 공동저술 네트워크가 안보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, 미신고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보안 신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○ R&D 매니지먼트 인력의 전략적 역할 확대: 단순한 연구행정 서류 지원을 넘어, 글로벌 연구보안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 주기(기획-선정-수행-종료)에 걸쳐 위험평가(Risk Assessment)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R&D 매니지먼트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.

---

2) SIRA 법안(H.R. 8901, Securing Innovation and Research from Adversaries Act)은 2026년 5월 미국 하원의원 존 물레나르(John Moolenaar)가 발의한 법안으로, 미국 정부의 제재·제한 대상 외국 기관 및 관련 인물과의 특정 연구협력에 연방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2026년 11월 3일 기준, 해당 법안은 하원 과학·우주·기술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단계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.